

2023년 12월 15일

Preview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그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거래의 증가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에 속한 지식재산권을 둔 법적 분쟁 역시 늘고 있습니다.

해외의 개인 또는 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국내 권리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 국제적 권리소진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본 뉴스레터에서는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걸 이슈 Legal Issues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소개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민후 소식 Minwho News

ArcGIS 저작권침해에 기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크롤링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 검토 법률자문

리걸이슈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소개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독점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는 속칭 '짜퉁' 제품의 판매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서 금지된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구매한 음반이나 서적과 같은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어떤가.

재판매 행위도 배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재판매하지 못하는 것인가.



원준성 파트너 변호사
T. 02-538-3427
E. wonjs@minwho.kr

만약 재판매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배포권에 관한 별도의 허락을 매번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중고거래 시장은 존속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통의 필요성, 중고거래 시장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론이 옳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품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리가 필요하다.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혹은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 불리는 법원리는 이러한 경우에 관한 배포권 제한원리이다. 저작권자는 '최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그 '권리가 소진'되었다고 보아 적법하게 구매한 정품 음반이나 서적을 재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재배포행위에 저작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원칙이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같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어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으므로, ①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②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이라면, 즉 적법하게 거래된 정품이라면 그 재판매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중고거래 시장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내로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저작권자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판매정책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수입판매 행위에 대하여도 배포권이 소진되었다고 본다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국가별 가격정책이 수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저작권자의 가격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는 국제적 권리소진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이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법적 측면에 있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있었으나 저작권법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그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①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A는 중국 기업 B에게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하였고, B는 다시 중국 기업 C에게 완구 제품 판매권을 위임하였다. ② 국내에는 저작권자 A로부터 국내 상품화권을 부여 받은 기업 D가 있었다. ③ 위 사건의 피고인은 C로부터 도라에몽 완구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국내에서 그 제품을 이전받아 판매하였다.

위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국 내 적법한 판매권을 가진 C로부터 구매한 도라에몽 완구를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 저작권법 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즉 C로부터의 정품 수입행위로 배포권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먼저 「저작권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저작권법은 제20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저작권법 제20조가 권리소진의 원칙을 규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시 후문에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행위는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상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에 국제적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외국의 최초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되어 국내에서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국제적 권리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적용문제라고 보았다. 즉 저작물이 외국에서 양도된 이후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와는 달리 직접 수입행위로 인하여 국내에서 비로소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경우는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의 이전 시점'이 권리소진 원칙에서의 '거래에 제공' 판단기준이 됨을 판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중국 판매업체 C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완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도라에몽 완구를 양도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위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된 행위인 위 수입행위는 소유권이 이전된 곳인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내를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다. 그런데 C는 중국 내 판매권만을 부여 받았을 뿐, 한국에서의 판매권은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국내에서의 판매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범위 외의 판매이다. 따라서 C의 판매행위는 곧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인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않고 존속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저작권침해행위의 죄책이 인정된 것도 같은 연유에서다.

반면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도라에몽 완구를 구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수입한 경우에는 다른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 경우는 외국에서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아래 저작물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로서 중국 내에서의 판매로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고, 따라서 이후의 수입행위는 배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배포권에 관한 국제적 권리소진 적용여부 및 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므로, 수출입업무 관련 종사자들은 그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리걸이슈

변제 완료한 채무에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

의뢰인 A가 상담을 요청하며“이미 다 지급해서 없는 채무인데도, 압류와 추심이 되었다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내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의하였다.

A는, B회사에게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을 의뢰하고 B로부터 그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유통·공급·판매하는 회사이다. A는 최근 B와의 물품 제조 및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수령하였다.

즉, A는 B에게 더 이상 줘야 하는 금전채무가 없었던 상태였고, 이러한 금전채무의 전액 정산은 무려 3개월 전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한지윤 파트너 변호사
T. 02-532-3425
E. hanjy@minwho.com

그런데 최근 A는 『채권자 X의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B의 제3채무자A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X는 채무자B의 제3채무자A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 받은 것이다.

서두에 정리한 것처럼, A는 이미 B한테 다 지급했는데 생면부지의 B의 채권자라 하는 X에게 그 금액을 또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며 당황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A는 자신이 받은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하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대법원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또는 ②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예컨대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대결96그63), 경매 절차 상의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대결96그64),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금을 위해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대결99마1348),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대결2011마482) 등 ‘절차상의 하자’를 그 사유로 한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압류추심 명령에 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인 A가 채무자인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즉,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사유이므로, 위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위 ①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는 A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다룰 수 없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 ②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이란, 사법보좌관의 결정 중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특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에 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과 같이 압류나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대결 2013마2212, 대결 2013마2429). 특히,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는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대결92마2 13, 대결2013마2146, 대결2015마172), 결론적으로 A가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3채무자인 A가 채무자인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즉,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사유인데 이러한 실체법 상의 사유는 압류나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이 아니므로, 결국 위 ②즉시항고 절차에서 본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그 시비(是非)를 가릴 수 없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는 A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다룰 수 없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법률적으로는 A는 이러한 실체법 상의 사유를 추심금 청구소송, 즉 채권자X가 제3채무자 A에 대해 금전지급 본안소송에서 B에게 이미 3개월 전에 모두 갚아 더 이상 B의 채권 자체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대처는 채권자 X가 A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방어적 태도로는 불안하다 생각된다면, 제3채무자 A가 채무자B와 채권자X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적극적으로 선행 제기하여 다룰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B와 연락하여 A가 수령한 압류 및 추심 결정 내용에 관하여 소통하고 B와 X가 'A는 B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점에 상호 동의하고 X에게 추김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A는 결정문만 받았을 뿐, 어떠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A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기에,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대응방법을 통해 대응하면 충분히 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한 불안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민후 소식

ArcGIS 저작권침해에 기한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들(의뢰인)은 건축 설계회사와 그 대표자로, 이 사건 프로그램인 ArcGIS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 주장 및 수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PC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파일 등이 설치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들의 저작권침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사용중이라는 점과 크랙파일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 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의 사용자 책임 또한 일정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민후 소식

크롤링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사의 크롤링 활용한 신규 서비스 관련 국내법 및 미국법상 법률리스크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글로벌 웹사이트상에 게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내법·미국법상 법률리스크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내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크롤링을 활용한 업무 행위의 적법성을 진단함은 물론, 크롤링 예정 웹사이트들의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A사 예정 서비스의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미국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크롤링 활용한 서비스 운영의 법적 위험성을 진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 또는 기타 법률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민후로 연락주시면 담당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